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종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576

발의연월일: 2020. 9. 7.

발 의 자 : 임종성・양이원영・윤미향

이원욱 • 윤영찬 • 소병훈

홍성국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유네스코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는 「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(유네스코) 후원 물 안보 및 지속가능 수자원 관리 국제센터(카테고리 2)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」(2016. 12. 23. 공포, 조약 제2330호)에 따라 2017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 자연과학 분야 유네스코 국제센터로, 설립 이래 물 안보 연구와 개도국 대상 물 관리교육·훈련 등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여 옴.

본 센터는 우리나라의 물 관리 정책과 기술을 개도국에 전파하는 연구·교육 사업을 통해 전 세계의 물 이용 역량강화에 기여하는 한편, 물 관리 일원화, 스마트 물 관리 등 국내 성과 사례를 국제사회에 확산하여 국내 물 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 기대됨. 이에 국제사회 내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 관리 정책과 기술의 가시성을 높이고, 물 관리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

강화하기 위하여, 본 센터를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충분한 법·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필요성이 높음.

한편, 한-유네스코 협정은 우리 정부가 법령에 따라 센터가 필요한 법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. 우리 정부는 본 센터의 운영 및 연구·교육 사업 시행을 위해 매년 10억 원 가량의 국고보조금을 지원 중이나, 이러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임. 더욱이,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등 국내 여타 유네스코 국제센터의 경우에는 개별법상 근거 규정이 완비되어 있음.

이에 본 센터 설립 및 국고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한-유네스코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전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36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물관리기본법안 일부개정법률안

물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6조의2(유네스코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의 설립 등) ① 「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(유네스코) 후원 물 안보 및 지속가능 수자원 관리 국제센터(카테고리 2)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」의 이행을 장려하고,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(이하 "물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"라 한다)를 설립한다.

- ②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는 법인으로 한다.
- ③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.
- ④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「민법」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유네스코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"라 한육센터(이하 이 조에서 "재단법인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"라 한다)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36조의2에 따라 설립된 물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로 본다. 이 경우 재단법인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는 「민법」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.
 - ② 제1항의 경우 재단법인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의 재산과 권리· 의무는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의 재산과 권리·의무로 본다.
 - ③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재단법인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가 행한 행위는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가 행한 행위로, 재단법인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.
 - ④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의 임직원은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임명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재단법인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36조의2(유네스코 물 안보 국
	제연구교육센터의 설립 등) ①
	<u>「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</u>
	(유네스코) 후원 물 안보 및 지
	속가능 수자원 관리 국제센터
	(카테고리 2) 설립에 관한 대한
	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
	정」의 이행을 장려하고, 세계
	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
	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유네스
	코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
	(이하 "물 안보 국제연구교육
	센터"라 한다)를 설립한다.
	②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
	는 법인으로 한다.
	③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
	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	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.
	④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
	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
	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
	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	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물

 안보
 국제연구교육센터의 운영

 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

 있다.